

##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에 관한 의안 설명자료

안전 제안 위원: 김순석, 김진석, 박균성, 오승이, 윤준, 이광만, 최한돈(성명순)

### 1. 논의 필요성

■ 현재 법원은 크게 보아 1. **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**, 2. **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제도**, 3. **판결서 방문열람 제도**라는 3가지 형태로 판결서를 공개하고 있음.

- 각 제도는 근거법령, 열람 등의 방식, 수수료 부과 여부, 비실명처리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음
- 이외에도 **종합법률정보 시스템**이 있으나, 이는 판결문 공개를 위한 것이 아닌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결만을 선별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입([비공개 결정으로 삭제]) 또한 인터넷홈페이지 “대한민국법원”에서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, 각급법원 웹사이트에서 ‘우리법원 주요판결’ 게시판을 운영 중이나, 그 숫자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됨
- **판결서 인터넷 열람** : 대한민국 법원 웹사이트 대국민서비스 →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정된 민·형사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검색 열람
- **판결서사본 제공신청** : 인터넷 열람 가능 판결서를 제외한 판결을 대상으로,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판결문 사본을 이메일, 직접, 모사전송 방법으로 제공
- **판결서 방문열람** : 법원도서관 특별열람실에 방문하여 법원의 종합법률정보시스템과 판결문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검색·열람. 출력 불가, 하루 이용자 약 40명
- **국민의 알권리, 재판 공개의 원칙, 사법절차의 투명화 및 법률산업 발전을 위해 판결서 공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**
- **반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책과의 충돌 문제, 인격권 보호, 미확정 판결서 공개시 사회적 혼란 등의 이유로 판결서 공개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.**
- 비실명처리의 효율 개선과 담당인력확충, 검수시스템 보완, 비실명처리 AI 활용 등 **비실명처리 방식과 절차의 개선방안** 연구 필요(사진 등 영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, 법인명 포함 여부, 상표나 특허 사건에 예외를 인정할지 여부, 미확정 판결의

차별성을 고려할 것인지 등)

- **미확정 판결서 공개범위 확대 여부 및 공개 기준**에 관하여, 상급심 판단과 다른 경우 법적 안정성의 문제, 사회적 분열 심화 우려 등의 부작용까지 포함하여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.
- 현재 미확정 판결에 대한 공개제한 신청권 규정이 미비한 상태로, 미확정판결 공개 확대시에는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음. 따라서 소송당사자 등의 개인정보, 인격권, 명예감정 보호를 위하여, 재판서/소송기록 열람·공개, 공개제한, 비실명화의 여러 국면에서 **공개제한 신청권 등 절차 보장**(규칙, 예규, 열람복사 제한신청서 양식 개정 등) 연구 필요
- **판결서 제공 형태**를 빅데이터 구축 및 연구목적 활용을 위하여 내용 복사, 키워드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할 것인지 여부
- 재판서, 집행문 등 법원작성문서가 **주소, 주민등록번호 등을 중심으로 생성 및 통용되는 방식의 개선방안** 검토
- 판결서 공개와 맞맞추어, 판결서 공개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, 명예 훼손 등 민·형사상 분쟁에서 **법원 및 법원공무원의 확실한 면책 방안**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

### 2. 안건의 구체적 내용

■ **‘판결서 공개제도 개선’에 관하여 분과위원회에 연구·검토 안건으로 회부할 것인지 여부**

- 판결서 공개제도는 법원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그 수요자인 일반 국민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, 공개범위 확대 필요성, 공개방법, 비실명처리 절차와 과정 개선, 관련 문제점 등에 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연구·검토가 필요하고,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과 재판 관련 당사자, 변호사, 소송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할 문제임
- 현재 사법정책연구원 2019년 연구과제로 ‘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’가 진행 중이고, 2020년 연구과제로 ‘형사재판절차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’가 선정됨. 또한 법원 내 사법정보화연구회 등에서도 관련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알고 있음.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각 단위에서 진행되는 연구 결과를 망라하고 전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.

- 판결서 공개제도는 재판제도분과위원회와 관련된다고 보이므로,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연구·검토할 안건으로 회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. (장기적으로는 재판제도분과위원회가 적어도 형사재판제도분과위원회/민사재판제도분과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)